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3
----------	-----

제출년월일 : 201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사유

- 가. 시·도지사의 사무가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사무로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 나. 관련법령에 따라 사무 용어 정비 및 사무위임을 추가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 또는 수정되는 사무

- 환경정책과 (안 별표 1, 안 별표 2 및 안 별표 5)
 -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 등의 사무에 대하여 제외 규정을 신설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 관리 : 市 대기보전과 소관사항
- 수질보전하천과 (안 별표 1, 안 별표 2 및 안 별표 5)
 -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지방 1, 2급하천 ⇒ 지방하천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를 정비함.
 - 구거·하천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권한⇒하천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권한
- 공원녹지과 (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표 4 및 안 별표 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으로 변경되어 용어를 정비함.

- 도시자연공원 사무 ⇒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사무
- 기 위임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민간공원 추진 및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사무를 신설함.
-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관련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추가함.
-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 공원·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일반·경관 광장)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나. 삭제되는 사무

- 건설심사과 (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삭제함.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변경,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사무
- 대기보전과 (안 별표 1, 안 별표 2 및 안 별표 5)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군수·구청장에게 이양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사무로 개정된 사무를 삭제함.
 - 비산먼지의 규제, 운행차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 수질보전하천과 (안 별표 1, 안 별표 2 및 안 별표 5)
 -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의 권한이 관할 홍수 통제소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유수의 사용허가”규정을 삭제함.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대상 물건 부재로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관한 권한”을 삭제함.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0쪽)
- 나. 별표 신·구대비표(38쪽)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실과별란 중 “중소기업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하고, 같은 표의 산업기반과 제2호 근거법규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과(산업기반과) 번호란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여 같은 표 기업지원과(중전의 중소기업지원과)의 제2호란 및 제3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산업기반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실과별란 중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하고, 같은 란 중 “재산관리과”를 “회계과”로 한다.

별표 1 중 건설심사과 제1호란부터 제8호란까지 및 제12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과 제1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과 제14호 근거법규란 중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으로 한다.

13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및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 법 제44조
----	------------------------------	--

별표 1의 환경정책과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활동에 의한 권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	-------------------------------

별표 1의 환경정책과 제4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별표 1의 대기보전과 제1호나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과(대기보전과)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	--

별표 1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별표 1의 수질보전하천과 제6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1, 2급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하고,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7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1, 2급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을 “「하천법」”으로 하며,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1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1, 2급 하천관리”를 “지방하천 관리”로 하고,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5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 1, 2급하천내”를 “지방하천 내”로 하며,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6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1,2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한다.

별표 1의 공원녹지과 제1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역”을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역,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조성 도시공원”으로 하고, 같은 호 위임사무명란 다목 중 “입안(도시자연공원 제외)”을 “입안”으로 하며,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호의 너목란 다음에 더목란 및 러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민간공원 추진	같은 법 제21조	
러.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같은 법 제21조의2	

별표 1의 공원녹지과 제1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외사항 :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안 및 설치

별표 1의 성과별란 중 “해양항공정책과”를 “항만공항정책과”로 한다.

별표 2의 성과별란 중 “중소기업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하고, 같은 표의 산업기반과 제2호 근거법규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과(산업기반과) 번호란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여 같은 표 기업지원과(중전의 중소기업지원과)의 제2호란 및 제3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산업기반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성과별란 중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하고, 같은 란 중 “재산관리과”를 “회계과”로 한다.

별표 2 중 건설심사과 제1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과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과 제7호 근거법규란 중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으로 한다.

6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및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같은 법 제44조
---	------------------------------	---

별표 2의 환경정책과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활동에 의한 권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	-------------------------------

별표 2의 환경정책과 제4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별표 2의 대기보전과 제1호나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과(대기보전과)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	----------------	--

별표 2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별표 2의 수질보전하천과 제6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1,2급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하고,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7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1,2급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을 “「하천법」”으로 하며,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1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1급, 2급하천관리”를 “지방하천 관리”로 하고,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5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1급, 2급하천내”를 “지방하천 내”로 하며,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6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1급, 2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하고,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9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공원녹지과 제6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성된 도시자연공원 시설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조성 도시공원”으로 하고, 같은 호 위임사무명란 다목 중 “입안(도시자연공원 제외)”을 “입안”으로 하며,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호의 너목란 다음에 더목란 및 러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민간공원 추진	같은 법 제21조	
러.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같은 법 제21조의2	

별표 2의 공원녹지과 제6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외사항 :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안 및 설치
--

별표 2의 성과별란 중 “해양항공정책과”를 “항만공항정책과”로 한다.

별표 4의 성과별란 중 “재산관리과”를 “회계과”로 한다.

별표 4의 공원녹지과 제1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도시공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호의 타목란 다음에 과목란 및 하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의 수임기관란 중 “서부공원사업소장”을 “서부·북부공원사업소장”으로 하며, 같은 과(공원녹지과) 제2호의 수임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 민간공원 추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제21조의2	
하.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북부공원사업소장

별표 5의 성과별란 중 “정보화통계담당관실”을 “정보화담당관실”로 하고, 같은 란 중 “중소기업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하며, 같은 란 중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하고, 같은 란 중 “재산관리과”를 “회계과”로 한다.

별표 5의 환경정책과 제1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 등 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 다.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2조
----	---	---

별표 5의 환경정책과 제22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별표 5 중 대기보전과 제2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5의 실과별란 중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별표 5의 수질보전하천과 제10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1,2급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하고,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1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1,2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법규란 중 “같은법”을 “「하천법」”으로 하며,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5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1,2급하천관리”를 “지방하천 관리”로 하고,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19호 및 제20호의 위임사무명란 중 “지방1급, 2급하천”을 각각 “지방하천”으로 하며, 같은 과(수질보전하천과) 제28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하천)”으로, “권한(단, 구거·하천에 한함)”을 “권한”으로 한다.

별표 5의 공원녹지과 제2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에 한함)”을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일반·경관광장에 한함)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호의 다목란 다음에 라목란부터 사목

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마. 공원·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
바.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일반·경관광장) 시행 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
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같은 법 제85조

별표 5의 공원녹지과 제3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호의 거목란 다음에 너목란 및 더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민간공원 추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더.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추진	같은 법 제21조의2

별표 5의 공원녹지과 제4호의 위임사무명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의 근거법규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관계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 제30조(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 제44조(과태료)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 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 제23조(개선명령) ○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 제27조(등록의 취소 등) ○ 제28조(관리·의무의 승계 등) ○ 제30조(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등) ○ 제39조(자체방재계획의 수립 등) ○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 제45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 제49조(과징금 처분) ○ 제50조(청문) ○ 제63조(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임) □□ 하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제3조(보상청구), 제4조(보상대상자의 결정) ○ 제6조(보상심의위원회),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제8조(보상금 지급의 통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칙<법률 제7476호>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p style="text-align: right;">“내용은 별지 작성”</p>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p>특이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관련법령 발췌사항

건설심사과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 2013.2.23] 제21조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 2013.2.23] 제24조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 2013.2.23] 제26조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 2013.2.23] 제28조

제30조(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건설기계조종사는 **제2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 2013.2.23.] 제30조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① 삭제 <1999.12.28>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1999.1.29]

[제목개정 2009.12.29]

제44조(과태료)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 2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4.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6.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8.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환경정책과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1. 유독물 제조업(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유독물 판매업
 3. 유독물 보관·저장업
 4. 유독물 운반업
 5. 유독물 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는 등록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유독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 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독물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유독물영업자에게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독물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3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가 운영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 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① 유독물영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영업자의 사업장에 있는 유독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독물의 폐기나 유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제27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과 관계되는 허가·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2.2.1>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급시설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1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과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1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20.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1.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제28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유독물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제30조(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독물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독물영업자별로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

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② 유독물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1.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의 경우: 환경부장관

2. 유독물영업자의 경우: 시·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이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체방제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수립기준, 제출방법 등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방제계획이 제4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자체방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

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5.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6.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8.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9.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10.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12.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 받은 자
 13. 제38조의2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14.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한 자
 15. 제5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45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년 유독물영업자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49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각각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

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12.2.1>

④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⑤ 삭제 <2012.2.1>

[전문개정 2007.12.27]

제50조(청문)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이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2.2.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는 제외한다)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26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5. 제28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7.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8. 제33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9.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10. 제35조를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1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자
13. 제3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40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1>

④ 삭제 <2010.5.25>

⑤ 삭제 <2010.5.25>

⑥ 삭제 <2010.5.25>

[전문개정 2007.12.27]

대기보전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23>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제목개정 2012.5.23.]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자동차제작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확인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정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확인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설 2012.2.1>

⑤ 전문정비사업자등이나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계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2013.1.31>

1.~16. 삭제 <2013.1.31>

17. **법 제70조**에 따른 개선명령

18.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수질보전하천과

□□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4.1, 2013.3.23>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9.4.1,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⑦ 2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4.14, 2013.3.23>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⑥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⑦ 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⑧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②(생략)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1.16, 2009.12.30, 2010.12.20, 2013.3.23>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홍수방지 등을 위한 조치명령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역조사 및 그 조사자료의 제공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8. 법 제1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징수
9. 법 제20조에 따른 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와 관련된 권한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의 작성·배포 및 자료제출 요청
11. 법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권한
12.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만 해당한다)
13. 법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홍수통제

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14. 법 제31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15.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의 제출요구
16.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관측결과와 관리상황에 관한 통지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
17. 법 제41조에 따른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권한
1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의 실시
19.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21. 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에 관한 권한
2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계획·사용실적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실적의 평가
23. 법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의 조정에 관한 권한
24.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홍수통제소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25.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처분(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6.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7.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 27의2.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사용(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8.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9.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0.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31.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2. 법 제9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및 지적공부상 지목
4. 편입토지의 현재 이용상황
5. 제방의 설치 유무
6. 편입토지의 국유로의 등기 여부
7.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군·구·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편입토지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새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할 때 편입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일부가 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대상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현황을 측량하여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변경·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 편입토

지조서를 모아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는 편입토지조서를 작성·변경·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⑨ 시·도지사는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보상청구 서식, 보상청구 기간, 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편입토지조서에 올라 있는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청구) ① **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1. 편입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보상청구에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0.11.2>
3. 인감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1. 주민등록표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본(「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부동산등기부 등본)
3. 지적도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밖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인에게 청구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청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군·구·

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⑦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제6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보상청구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⑧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상청구서에 제2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 및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제4조(보상대상자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제3조제8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서와 의견서 등 그에 첨부된 서류 및 편입토지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가 보상대상 토지인지와 해당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보상청구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상청구인 및 의견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심의위원회) ①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보상대상자의 결정
2. 보상계획의 수립
3. 보상금액의 사정(査定)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할 구역의 주민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감정평가사 등 보상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되, 출석위원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① 시·도지사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1. 감정평가액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된 경우
2. 감정평가업자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하는 등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하천관리청(「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의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의 통지) 시·도지사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7476호, 2005.3.31>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삭제 <2009.1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까지의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9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사업비(토지매입비를 포함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18>

[전문개정 2011.9.16]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으로서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의 규모는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로 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공원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공원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거나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 일 것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 설정되어야 한다.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제8항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매입비는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등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⑦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19조제

5항,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민간공원추진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부채납의 시기
2.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방법
3.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
4.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부지의 위치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의 협약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16]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

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 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3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85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4.14>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86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

별표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중소기업 지원과	1	“생략”	“생략”		기업 지원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산업 기반과	1	“생략”	“생략”		<삭 제>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계량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생략” 동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38조			3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같은법 ----- 같은법 ----- 같은법 ----- 같은법 ----- 같은법 ----- 같은법 -----		
일자리 창출과	1	“생략”	“생략”		일자리 정책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재 산 관리과	1	“생략”	“생략”		회계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 설 심사과	1	건설기계조종사 면 허증 발급	「건설기계관 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71조		----	<삭 제>				「건설기계관리 법」 개정 에 따 라 군수·구청 장에게 이양된 사무 삭제
	2	건설기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건설기계관 리법」 제44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94조		----	<삭 제>				
	3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	「건설기계관 리법」 제30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82조		----	<삭 제>				
	4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대장 비치	「건설기계관 리법」 시행규 칙 제78조		----	<삭 제>				
	5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증의 반납	「건설기계관 리법」 시행규 칙 제80조		----	<삭 제>				
	6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의 취소·정지	「건설기계관 리법」 제28조		----	<삭 제>				
	7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증 재교부	「건설기계관 리법」 시행규 칙 제77조		----	<삭 제>				
	8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번호 부여	「건설기계관 리법」 시행규 칙 제72조		----	<삭 제>				
	9~11	“생략”	“생략”		9~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12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여업에 한함) 가.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 나. 건설기계 사업자의 변경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6조의2				<삭 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 삭제 및 위임규정 정비
	13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13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및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같은 법 제44조			
	14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항 가.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생략”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생략”		14	----- 가.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 시행령」 -----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제명변경에 따른 정비
	15	“생략”	“생략”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환경정책과	1	「야생동물·식물보호법」에 의한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활동에 의한 권한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11조제1항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활동에 의한 권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근거법규 제명변경에 따른 정비
	2~3	“생략”	“생략”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하.(생략)	“생략”	<신설>	4	----- 가.~ 하.(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누락규정(제외규정) 신설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함
	5~6	“생략”	“생략”		5~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기보전과	1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생략) 나. 비산먼지의 규제 다.~바.(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3조 “생략”	“생략”	1	----- 가.(현행과 같음) <삭 제> 다.~바.(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 삭제
	2	「대기환경보전법」에			2	「대기환경보전법」에	「대기환경보전			지자체 고유사무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중소기업 지원과	1	“생략”	“생략”		기업 지원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산업 기반과	1	“생략”	“생략”		<삭제>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제량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생략” 동법 제5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38조			3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같은법 ----- 같은법 ----- 같은법 ----- 같은법 ----- 같은법 ----- 같은법 -----		
일자리 창출과	1	“생략”	“생략”		일자리 정책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재산 관리과	1	“생략”	“생략”		회계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설 심사과	1	건설기계 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재교부 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등 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취소·정지 사. 건설기계조종사 의 신고의무 아. 건설기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건설기계관 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71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72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77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78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80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82조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94조		----	<삭제>				「건설기계관 리법」 개정 에 따라 군수· 구청장에 게이양된 사 무삭제
	2~4	“생략”	“생략”			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건설기계사업에 관 한 다음의 권한 (단, 대여업에 한함) 가. 건설기계 사업 자 공고 나. 건설기계 사업 자의 변경신고	「건설기계관 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 칙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66조, 제 66조의2			<삭제>				「건설기계관 리법」 개정 에 따라 군수· 구청장에 게이양된 사 무삭제 및 위 임규정 정비
	6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건설기계관리 법」 제33조 및			6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및 금지행위에 대한	「건설기계관리 법」 제33조 및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과태료 부과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같은 법 제44조		
	7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항 가.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생략” 「건설기계저당 법시행령」 제2조 “생략”			7	----- 가.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동차 등 특정동 산 저당법 시행령」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제명변경에 따른 정비
환경 정책과	1	「야생동물·식물보호 법」에 의한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 동물의 구조·치료 활동에 의한 권한	「야생동물·식물보호 법」 제11조제항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 의 구조·치료 활동에 의한 권한	「야생생물 보 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항		근거법규 제명변경에 따른 정비
	2~3	“생략”	“생략”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하.(생략)	“생략”	<신설>		4	----- 가.~하.(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지정된 국가산업단 지 및 일반 산업단지안 의 사업장 제외	누락규정(제외규 정) 신설로 관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함
	5~6	“생략”	“생략”			5~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기 보전과	1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생략) 나. 비산먼지의 규제 다.~바.(생략)	「대기환경보전 법」 제41조 및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3조 “생략”	“생 략”	----	1	----- 가.(현행과 같음) <삭 제> 다.~바.(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련법 개정 에 따라 군 수·구청장 에게 이양된 사 무 삭제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운행차의 개선명령 나. 과태료 부과, 징수	「대기환경보전 법」 제70조 같은법 제94조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	「대기환경보전 법」 제94조		지자체 고유사 무에서 환경부 위임사무로 변 경된“운행차의 개선명령”업무 위임규칙으로 이관
	3	“생략”	“생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청소과	1~12	“생략”	“생략”		자 원 순환과	1~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수질보전 하천과	1~5	“생략”	“생략”		----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지방1,2급 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다.(생략)	“생략”			6	지방하천----- ----- 가.~다.(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하천법 개정하 천 구분변경 사항 반영 및 관할 홍수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정보화통계담당관실	1~2	“생략”	“생략”		정보화담당관실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중소기업지원과	1~5	“생략”	“생략”		기업지원과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자리창출과	1	“생략”	“생략”		일자리정책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재산관리과	1~2	“생략”	“생략”		회계과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환경정책과	1~15	“생략”	“생략”		----	1~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야생 동·식물 보호원 임명 등 나. 명예 야생 동·식물 보호원 위촉 다. 야생 동·식물 보호원등의 해임·위촉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59조 같은법 제61조 같은법 제62조			16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 등 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 다.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	「야생생물 보호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2조		근거법규의 제명변경에 따른 정비
	17~21	“생략”	“생략”			17~2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하.(생략)	“생략”	<신설>		22	----- 가.~ 하.(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안의 사업장 제외	누락규정(제외규정) 신설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함
대기보전과	1	“생략”	“생략”		----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법 시행규칙 별표9 환경부장관 권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함) 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수리 나.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 다. 명령미이행자에 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제43조제2항 같은법 제43조				<삭 제>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 삭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4	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u>「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녹지)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아. (생략)	“생략” <u>동법</u> 제38조 <u>동법</u> 제25조 <u>동법</u> 제41조 <u>동법</u> 제45조 <u>동법</u> 제46조 <u>동법</u> 제56조 “생략”			4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같은 법</u> ----- <u>같은 법</u> ----- <u>같은 법</u> ----- <u>같은 법</u> ----- <u>같은 법</u> ----- <u>같은 법</u> -----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제명변경에 따른 정비
	59	“생략”	“생략”			5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